

※ 동 사업 시행지침은 '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발하기 위해 운용하는 지침입니다.

※ 동 지침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('23년 12월)을 준용합니다.

# 20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

2024. 3.



농림축산식품부  
청년농육성정책팀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사업개요 .....                | 1  |
| II. 사업대상자 <b>추가</b> 선정 ..... | 2  |
| 1. 지원자격 및 요건 .....           | 2  |
| 2.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 .....      | 6  |
| III.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.....       | 10 |
| 1. 영농정착지원금 .....             | 10 |
| 2. 연계 지원 .....               | 14 |
| IV. 의무사항 및 이행점검 .....        | 18 |
| 1.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.....         | 18 |
| 2. 이행점검 .....                | 30 |
| 3. 단계별·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.....     | 31 |
| 4. 기타 행정사항 .....             | 32 |
| < 부록(별표·별지) > .....          | 35 |



##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

- 동 사업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  -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·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·농지·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,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·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.
-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,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.
- 특히, 정책자금(이차보전) 지원은 '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'을 활용해 지원하므로,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, 용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.
  - \*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(농협 등)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,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- \* 농신보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는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」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유통을 지원합니다.
  - \*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,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·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  - \*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- \* 2차 대출 신청 시,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.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 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2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# 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시행지침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적

-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사업(임대·매매 등)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
  -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-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

### 2. 관련 법령
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업인 우대)

### 3. 추진경과

-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(농업혁신을 선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)
- 국정과제(71,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) 세부실천 과제

### 4. 성과지표

| 성과지표           | 2024년 목표치 | 최근 3개년 실적 |      |        | 지표산출시기   | 측정방식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'21       | '22  | '23(p) |          |   |
| 청년농업인 영농정착률(%) | 92.3 (예정) | 92.0      | 92.1 | 92.2   | '23.12월말 | (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선발인원 중 영농종사 인원 /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선발인원)×100 |

## II. 20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**추가 선정**

### 1. 지원자격 및 요건

#### 1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

가.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 
(‘24년 사업 기준 : 1984.1.1 ~ 2006.12.31. 출생자)

(예외)

- 한국농수산대학교,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(당해연도 수료예정자 포함)
  -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,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
-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중에 사망한 경우, 배우자가 사업 신청 가능(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)
  - \* 단, 사망한 사업대상자의 선발 연도에 배우자가 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다면 사업 신청 가능
  - \*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영농승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경영체 확인서, 후계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

#### 나.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
-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(임차 등 포함)을 마련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, 직접 영농에 종사(주품목)하는 경우에 인정

(용어)

- 임차 :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, ①배우자,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·시설을 임차하거나, ④타인과 공유지분(지분비율 무관) 형태로 농지·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
- 주품목 : 전체 영농규모(영농계획서 상) 중 비율(소득 및 재배면적 등)이 가장 큰 품목

-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
-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

○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: 21.1.1. 이후 경영주 등록자

- 독립경영 1년차(2023.1.1. 이후 등록자 ~ 2024년 등록 예정자), 2년차(2022.1.1. ~ 2022.12.31. 등록자), 3년차(2021.1.1. ~ 2021.12.31. 등록자)
- \* 독립경영 1년차는 2023.1.1. ~ 2024.3.31.이며,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.4.1. ~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
- 단,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, 학업, 질병, 임신(10개월) 및 출산(최대 6개월 이내)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
- \* (예시1) 2020.1.1. 경영주 등록 → 2020.3.10.~2021.12.9(21개월) 군복무 → 2021.12.10. ~ 2022.12.27. 영농(독립경영) :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
- \* (예시2) 2021.1.1. 경영주 등록 → 2022.1.10. 출산 → 2022.12.27. 사업 신청 :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, 임신기간(10개월) 및 출산(6개월)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
- 이에 따라, 2020.12.31.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

다.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(예외)

-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
  - 단,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
  -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
-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
  - 단,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,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

라.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
-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·군·광역시에 신청 가능
  - \* 단,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(별지 3호 서식) 전 날짜까지 해당 시·군·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(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)
  - \*\* 이 경우, 이전하려는 시·군·광역시의 국비·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



## 2) 1)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

### 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
(예외)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 하더라도 신청 가능

-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(기한: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)는 신청 가능
-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\*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  - \*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
- 농가 부업 소득활동\*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  - \* 반드시, 영농에 종사하면서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
-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,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- \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-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,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
  - \*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% 이상
  - \* 다만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,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% 미만도 허용

###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(예외)

-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,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(기한: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) 신청 가능
-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
  - \* (단,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)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 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
  - \*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

#### 다.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
- 기준 : 본인세대\*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
- \*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
- '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, 사업 신청 불가

< '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(가구원 4인 기준) >

| 구분   | 직장가입자<br>본인부담액  | 지역가입자<br>부과액    | 혼합*<br>(직장가입자+지역가입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본인세대 | <b>272,226원</b> | <b>249,281원</b> | <b>278,492원</b>      |

- \* 혼합 :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,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
- \*\* 5인 이상 가구 :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**140%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**
- \*\*\*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'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' 등을 통해 확인 가능
- 다만,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
- \*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

#### 라.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
(예외)

-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
-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

#### 마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
#### 바.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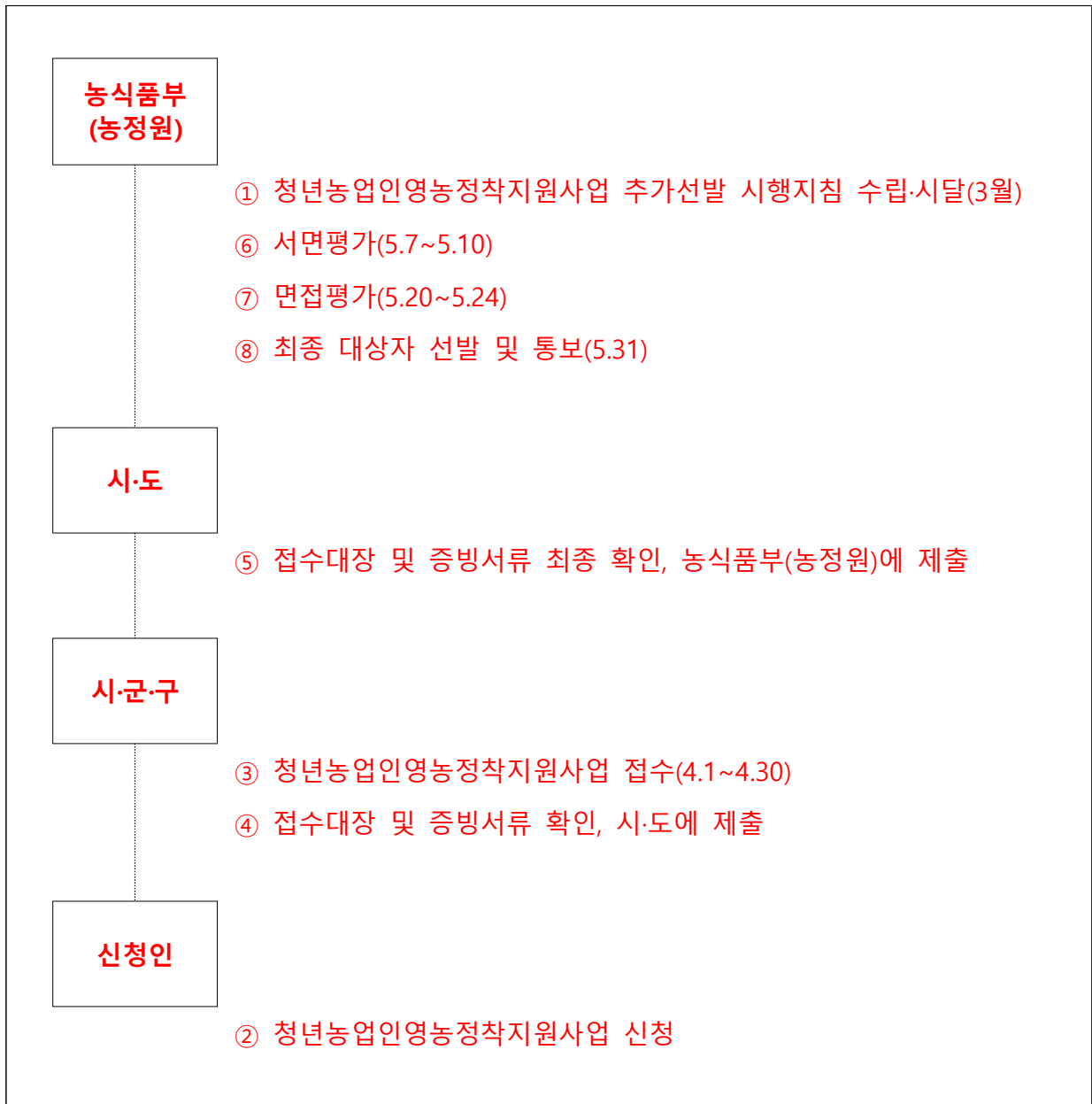
## 2. 사업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

### 1) 사업추진체계

① 농식품부 : 계획 및 지침 시달('24.3월), 설명회 등 홍보 추진(~4월 말) → ② 시·군·구 : 공고 및 신청 접수(4.1~4.30) → ③ 시·도(시·군·구) : 접수대장 및 증빙서류 제출(농식품부(농정원), ~5.3) → ④ 농식품부(농정원) : 서면평가(5.7~5.10) → ⑤ 농식품부(농정원) : 면접평가(5.20~5.24) → ⑥ 농식품부 :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(5.31)

\*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#### <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 절차 >



## 2) 담당기관별 역할

### 가. 사업 신청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시행지침을 수립하고, 시·도(특광역시 포함) 및 농촌진흥청,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(이하 농정원) 등에 시달

#### 시·도(특광역시 포함)

-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·군·구 등에 통지

#### 시·군·구(특광역시 포함, 이하 시·군·구)

-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·접수
  - \* 시·군·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·절차 등을 게시·공고 및 홍보
  - \*\* 주요 공고 내용 : 목적,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접수처, 선정절차 및 일정 등
-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

#### 신청인(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)

-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입력하여 제출
  - \* 신청 시 시·군·구를 반드시 선택하고,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
##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-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 및 홍보계획 등을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의 동 사업 참여 확대 추진
  - \*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·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설명회, 콜센터 운영, 사업 참여 홍보 등 추진

### 나. 사업대상자 선정

#### 시·군·구(특광역시 포함, 이하 시·군·구)

-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의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
  - \* [별표 1]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활용
- 사업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·도에 추천
- 농정원으로 통보받은 평가 소요비용을 기한 내 지급(시·도 포함)

#### 시·도(특광역시 포함)

- 시·군·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의 증빙서류 및 접수대장을 확인하고,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농식품부(농정원)에 기한 내 제출
- 시·도 담당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·면접 평가 시 반드시 참석하고 결과 확인
  - \* 농정원에서는 시·도 담당자 참석 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송부하고, 평가 결과에 대한 시·도 담당자 서명 및 명부 작성 등 조치

##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- 평가에 대한 기준은 「20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(23.12월)」을 준용하여 운영
    - \* [별표 2], [별표 3]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 - 서면·면접 평가 관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운영
- 
-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의 증빙서류 및 접수대장을 확인하고, 지정한 서면심사 전문평가기관에 송부
  -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, 면접평가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 실시
    - \*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평가 대상자에게 면접 일정 통보
  - 평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시·군·구 선발운영비로 활용되도록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해당 시·도에 통보

## 농림축산식품부

-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, 최종 추가 사업대상자를 시·도에 통보

## 시·도, 시·군·구(특광역시 포함)

- 기존 선발 명부에 추가 사업대상자를 합산하여 최종 명부 작성

### Ⅲ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

※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,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,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,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은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

#### 1. 영농정착지원금

##### 1) 지원규모

- 지급규모 : '24년 총 5,000명(추가 선발 472명)
  - \* 추가 선발 규모 초과 인원은 대체 인원으로 구성하여 시·도에 통보
- 총사업비 : 122,470백만원(국비 85,740백만원, 지방비 36,730백만원)
 

(단위: 백만원, %)

| 세부 내역     | 사업비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시행주체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| 국비         | 지방비        | 합계      |      |
| 영농정착지원금   | 83,370(70) | 35,730(30) | 119,100 | 지자체  |
| 선발운영비     | 1,000(50)  | 1,000(50)  | 2,000   | 지자체  |
| 사후관리홍보    | 1,370(100) | -          | 1,370   | 농정원  |
| <b>합계</b> | 85,740     | 36,730     | 122,470 |      |

\* 20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총사업비 준용

##### 2) 지원기준

- 지원조건 :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·군·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
  - '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(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)부터 지급하되,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
  - \* (1개월~12개월) 110만원, (13개월~24개월) 100만원, (25개월~36개월) 90만원

- '24년도 등록 예정자는 '25년 2월 28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

-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

○ 지원금액 :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
\*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
○ 지원인원 : 농업경영체별(농업인, 농업법인)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

(예외)

- 부부(사실혼 관계 포함)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 사람만 지급 가능
  - \* 다만,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간 결혼을 할 경우,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(경영주)를 유지한다면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
-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(Team 창업)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
  - \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대표자)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며,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(법인카드 발급 불가)

○ 지원기간 : 독립경영(영농)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

< '24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>

| 구분       | 지원 1년차<br>(2024.4 ~ 2025.3) | 지원 2년차<br>(2025.4 ~ 2026.3) | 지원 3년차<br>(2026.4 ~ 2027.3) | 합계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독립경영 1년차 | 110만원(12개월)                 | 100(12)                     | 90(12)                      | 3,600(36) |
| 독립경영 2년차 | 100만원(12개월)                 | 90(12)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280(24) |
| 독립경영 3년차 | 90만원(12개월)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80(12) |

\* 단,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(예외)

- 사망한 사업대상자 영농기반을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업에 선발되었다면,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영농정착지원금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
  - \* (예시)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,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22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



### 3)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

- 사용 용도 :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
※ **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**

- 단, 농지 구입, 농기계 구입(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/4 이상인 경우)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
- 유흥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(별표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)

- 지급 방법 :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- \* 인근 농협(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)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·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·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,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

\*\*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

- 신청 시기 : 독립경영 1~3년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,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(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)

- 지원금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를 이용하여 '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(연4회)

- \*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·군·구 담당자에게 제출

\*\*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,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(성실신고)

- 사용기간 :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(연장불가)

- \*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(농협카드 포함)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(잔액 이월 불가),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

#### 4)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집행 체계

##### ○ 세부 집행 체계

| 구분        | 주요 내용   |
|-----------|---|
| 1) 자금 흐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농식품부→지자체(시·도)→지자체(시·군·구) 정착지원금 배정(주기 : 반기)</li> <li>- [지자체(시·군·구)→농정원]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(반기)</li> <li>- [농정원→농협카드] 전국 영농정착지원금(바우처 이용액) 지급</li> </ul>  |
| 2) 카드 발급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농협카드] '청년농업희망카드' 상품 발행</li> <li>- [대상자] 본인 명의 카드신청(영업점 방문/인터넷)</li> <li>*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</li> </ul>  |
| 3) 바우처 등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대상자→Agrix]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</li> <li>- <b>[지자체(시·군)→Agrix]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(매월 25일까지)</b></li> <li>* 지자체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</li> <li>- [농정원→농협카드] 바우처 한도 전송(전송주기 : 매월 1일)</li> </ul>      |
| 4) 카드 사용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대상자]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</li> <li>- [농협카드]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(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,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),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</li> <li>- <b>[농협카드]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(12.20.) 및 미사용 한도 안내</b></li> <li>* <b>관할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한도 및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</b></li> </ul> |
| 5) 정산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농협카드→농정원]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</li> <li>- [농정원→농협카드]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정산 지급(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)</li> <li>- [농협카드→농정원→지자체(시·도)] 개인별,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, 보조금 반납</li> </ul>   |

\*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(농·축협에서만 취급)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

## 2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

### <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>

※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·자금·기술 등을 종합 지원

### < 연계 지원 흐름도 >

- ◆ (청년농)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·자금·기술지원 사업 명기
  - (지자체)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
  - (농식품부·농정원)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
  - (유관기관)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(농정원)에 제출
  - (지자체)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
- ※ 유관기관 : 농진청, 농어촌공사, 농금원, 농협 등 농지, 자금,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

1) 농지지원 :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·매입 지원

### 2)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

○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(최대 5억원)하고,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선발(5점 가점)

\*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

\* (예시) 후계농으로 선정된 남편이 2억원 대출 시,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업 경영인육성자금 신청 가능(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)

○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 우대(95%)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

※ 단,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

## <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>

-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(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)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**‘정책자금 사용 용도’ 및 용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** 우선 확인
  - \* **주요 용자 제외 대상** :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(표고버섯, 송이버섯 등)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, 저장·가공·제조용 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 지원 등
- ②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**대출취급기관(농협은행, 지역 농·축협)에 통장 및 영농정착 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**할 경우,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
- ③ 동 정책자금은 **개인신용(5%) 및 농신보 보증(95%)에 대한 기준을 충족**해야 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**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**
  - **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,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(최대 5억원, 연리 1.5%, 5년거치 20년상환)**
- ④ **개인신용에 대한 평가**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
  -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, 대출 상환 이력, 신용카드 한도,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**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**
  - 정책자금 신청 전에 **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**
- ⑤ **농신보 보증 심사 시**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,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**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,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** 등 필요
  -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
- ⑥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(농협 등)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,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

-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제고 및 유통·가공 등 경영 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투자 지원(단, 해당 사업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필요)

### 3)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·컨설팅 지원

-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
-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 농업법인 운영 등 경영 역량 습득을 위한 농업법인 취업프로그램 우선 지원
-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'농업교육포털'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 지원

### 4) 행정사항

- 관련 기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적(농지, 자금, 교육·컨설팅 등)을 취합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
#### < 기관별 역할 >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

-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목록을 연계 사업기관으로 통보

### 농촌진흥청

- 농촌진흥청(역량개발과)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자 등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
-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대학 등 교육·컨설팅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

### 한국농어촌공사

-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도별 사업대상자 명단을 받아 농지은행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(매매·임대 물량 발생 시 우선 지원)  
\*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(지원금 지급대상자)를 최우선 지원

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사업규모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벤처펀드, 지역 특성화펀드, 영파머스펀드 등을 홍보하고, 컨설팅 등 지원

###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

-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신청 시 우대 보증 적용

## IV. 의무사항 및 이행점검

### 1.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

※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, 위반시 시·군·구 (특광역시)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

\*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며, 의무교육(필수과정만 해당)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

※ 용어 설명

\* 일시정지 :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 재개,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

\* 지급 기간차감 :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

\* 자격 박탈 :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, 기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·농지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(단,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탈 시 후계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 조치)

#### 1) 독립경영 이행 :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(경영주) 등록

\*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해야 하며, 미이행 시 선정 취소

< 제재 조치 >

○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선정 취소

#### 2) 의무교육 과정 이수 :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<별표4>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

○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\*(농식품부에서 주관) 및 선택과정으로 구분

\*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,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

○ 필수교육 과정

-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

\*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

※ 필수교육 시간

- (사업선정 1년차) '24년 선정자, 28시간
  - \*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(2), 워크숍(14), 비대면 교육(12)
- (사업선정 2년차) '23년 선정자, 8시간(집합교육)
- (사업선정 3년차) '22년 선정자, 8시간(집합교육)

○ 선택교육 과정

-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, 연 최대 72시간
-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이내에서 인정
  - \* 단, 도서지역(제주도 제외,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(도서지역))은 선택 교육시간의 70%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

※ 선택교육 시간

- (교육시간)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
  - \* 당년도 4월~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(연간 최대 72시간)
  - \* 산정방식 : 필요 이수시간 = 지원금 수령 개월 수 × 6시간(연간 최대 72시간)

※ 선택교육 관련 유의사항

- 1~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
- 선택교육 이수 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
-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
-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,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
  -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, 정부인증(친환경, GAP, HACCP, 저탄소 농축산물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 등),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
  - ② 품목별 연구회(시·군 농업기술센터), 경영체컨설팅(농정원), 기술컨설팅(농업기술진흥원) 등



## < 제재 조치 >

### ○ 의무교육 미이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

#### - (필수)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기간 2개월 차감

\* 필수과정의 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는 정착지원금은 지급하되, 차기연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개월 차감

#### - (선택) 미이수 시 이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 기간\*차감

\* (30% 이하) 2개월, (30~80%) 1개월, (80% 이상) 주의 조치

## 3) 재해보험, 자조금 가입

### ○ (재해보험)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(기한 차년도 3월)

- 단, 해당 재해보험 상품에서 정하는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

\*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, 소 이력제 현황의 70% 이상 가입 시 포괄 가입으로 간주

### ○ (자조금)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% 이상 가입 상태 유지

\* 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 의무 없음

- 단,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면적 및 사육두수 등 영농 규모 하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영농규모인 경우에만 적용

< 제재 조치 >

- 기한 내에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차기 연도 정착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

4) 경영장부(회계기록 및 영농일지) 기록(의무영농 중인 자 포함)

-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·제출(방문 제출 불필요)

< 제재 조치 >

- 경영장부 미기록(미제출) 시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
  -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(소급) 시 지급 재개, 단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(의무영농자는 자격 박탈만 적용)

5) 영농계획 이행(의무영농 중인자 포함)

-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
  -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가능
    - \* 다만, 사업신청서(별지 1호 서식)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에게 신고로 대체 가능
  - 영농유형 변경(경종↔축산)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

- ①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영농계획서 포함)와 변경사유서(증빙서류 포함)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- ② 시·군·구는 "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\*"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실시
  - \* 구성(총 4명 이상) :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·운영
  - \* 외부 평가위원은 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와 제척, 기피 심사위원으로 구성
  - \*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
  - \* 평가위원들은 사업대상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(별표2)에 따라 집합토론 심사진행(담당과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)
  - \* 평가 항목별로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(4개)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"가"의 평가를 한 경우에만 적합자로 선정

### < 제재 조치 >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의 승인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,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  - \* 단,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부여(최대 3개월)가 가능하며, 개선이 완료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### 6)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: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,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(의무영농 종인자 포함)

#### 가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

(예외)

-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\*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  - \*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
- 농가 부업 소득활동\*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(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)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
  - \* 반드시, 영농에 종사하면서 「소득세법」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
-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,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- \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
## 나.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
\*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(별지 6호 서식) 필요

(예외)

-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(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가능)

\* 의무영농 중인 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월 100시간까지 허용

## 다. 영농 포기, 휴경,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

\*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구류·구금,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

(예외)

-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영농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한기를 활용해 1년에 최대 3개월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

\* 반드시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(별지 6호 서식) 필요

\* 청년농업인의 작목·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기간(1~3개월)을 설정

- 농업 관련 근로 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영농 외 활동 가능

\* 반드시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의 본인영농 외 활동 사전 승인(별지 6호 서식)을 받아야 함

(용어)

### ◇ 농업 관련 근로 활동

- 농식품부·지자체·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활동

- 지자체·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

-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낙농헬퍼(도우미) 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활동

- 농업법인을 통한 근로 활동(단, 농업생산 활동으로 제한)

### ◇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

-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(행안부), 로컬크리에이터 사업(중기부), 신활력플러스,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(농식품부)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근로 또는 서비스 공급 활동

## 라.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원을 수행하는 행위

(예외)

-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참여 가능
-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를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참여 가능

### < 제재 조치 >

#### ○ 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

- 기지급된 지원금은 위반 행위가 이뤄진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\*하고 사업대상자 자격\*\*을 박탈

\* 환수금액은 시작 월까지 포함하여 월할로 계산

\*\*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따른 자격 박탈 시에는 후계농 자금 상환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 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
\*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(한국은행 통계 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
(예외)

- 불가피하게 전업적 독립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, 정착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
- \* 신병(질병·상해)·기상재해, 출산·육아,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이 인정하는 사유
- \*\* 출산유예(최장 3개월, 지원금 지급)와 육아유예(최장 2년간, 지원금 미지급)를 구분하되, 총 지급기간은(최장 36개월)은 유지

7) 성실신고 :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  
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\*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

\* 사업계획서, 경영장부,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
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,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 
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

\* 품목,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, 농지, 축사,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

< 제재 조치 >

-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, 영농종사  
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  
대상자 자격 박탈

-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 
작성한 경우,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된 시점을 기준  
으로 지급된 금액을 환수(월할로 계산, 시작 월 포함)하고,  
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  
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
\*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 
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(한국은행 통계  
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
-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 기한\*까지  
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

\* 경영장부,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

-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 
이후 1개월간 지급 기간차감

\* 단,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기간차감시 향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 
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
## 8)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

-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

- 유흥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\*

\* 사업대상자는 부정사용 의심 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

### < 제재 조치 >

-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
-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,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·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

- 현장점검,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,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재개

-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고,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

\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공표,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로부터 지원금 상환 조치를 통지 받은 자는 통지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

\*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(한국은행 통계 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)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

-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일시정지하고, 3개월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시·군·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

9) 의무영농기간 준수 :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

-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 유지 필요
-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기간과 별개로 각각 산정

\* (예시) 한농대 졸업생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급 받은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(한농대 졸업에 따른 의무영농 6년 +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따른 추가 3년 +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 및 추가기간 6년)

< 제재 조치 >

-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(지급기간 + 추가기간)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(월할로 계산)
-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·군·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



<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>

※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\*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

\* 지원금 수령액 : (110만원 × 12개월) + (100만원 × 12개월) + (90만원 × 6개월) = 3,060만원

- 환수율 계산 공식 :  $100 - \left(\frac{A}{B} \times 100\right) = \text{환수율}$

\* A(영농기간) = 지원금 수령개월 +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(개월)

B(의무기간) = 지원금 수령개월 × 2

-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

②  $100\% - [(35\text{개월} \div 60\text{개월}) \times 100] = 41.67\%$

③ 3,060만원의 41.67%인 1,275만원을 환수

- 다만, 사업대상자가 신병·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·군수·구청장(광역시장)이 인정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 가능

< 지원금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시 >

◇ 환수 유예 :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,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등

◇ 환수 중지 : 질병·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상실된 경우 등

**<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>**

| 의무사항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준수 사항   | 위반 시 조치사항(제재)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의무교육 이수           | 필수 과정        | • 농업정책, 농업마인드, 농업경영   | •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선택 과정        | • 생산기술,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30%미만 이행   | •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• 30~80% 이행  | •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• 80%이상 이행  | • 주의조치<br>*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 기간차감   |                   |
| 재해보험, 의무자조금 가입    |              | •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영장부 기록           |              | •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<br>*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영농계획 이행           |              | •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계획 변경(영농유형, 규모 축소 등) 금지                     | •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<br>* 단,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부여 가능(최대 3개월, 지급 기간차감) |                   |
| 전업적 독립 영농유지       |              | • 상근 고용,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(월할)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|                   |
| 성실 신고             | 선발시 신청서류     | • 영농계획서, 의료보험 부과액 등   | •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이행 점검        | • 영농이행실적 보고, 경영장부,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(월할)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<br>• 미제출시 지원금 일시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| •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,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변경 신고 | •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<br>*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치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|              | •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신청<br>• 사업목적(I-1) 및 사용용도(Ⅲ-1-3)에 따른 사용    | • 지원금 미신청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<br>• 적발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,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의무영농 기간준수         |              | •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(독립경영)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(지급기간 + 추가기간)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\*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%의 제재부가금,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\* 지급 종료 후 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기간차감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(최종 지급월 기준)

## 2. 이행점검

- 시·군·구(특광역시)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대상자(의무 영농대상자 포함)의 의무이행\*을 점검하고 시·도에 보고
  - \* 영농이행실적, 카드사용실적 등 의무이행점검 세부계획 등을 참고하여 점검
  - 점검 결과,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, 지급 기간차감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시·군·구(특광역시)는 대상에게 사전 통지
  - \* 사전 통지에 대한 소명기간을 15일 이내로 부여하며, 의견 검토 후 결과 확정
  -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경우, 각 시·군·구(특광역시)는 대상 및 사유, 조치사항 등을 시·도로 보고하고, 시·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그 결과 등을 취합하여 제출
  - 점검결과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조치는 이행 결과 보고 후 결과보고한 당해연도에 지급 기간을 차감
  - 다만,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, 사업대상자의 정지·취소 등의 조치 가능(사업대상자 소명으로 조치 취소 가능)
- 시·군·구(특광역시)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이후 7월부터 월 단위로 이행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식품부(농정원)에 제출

### 3. 단계별·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

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
-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,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
  - \*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,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

#### 시·도(특광역시 포함)

-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농 네트워크를 지원
  - \* 워크숍 추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제출

#### 시·군·구(특광역시 포함)

- 분기별로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(카드사용 실적 포함) 등을 점검하고,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
  - \*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는지 여부 확인
  - \*\*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을 구성·운영(소요예산은 선발·운영비에서 사용가능)

##### □ 현장지원단 구성(안)

- 시·군·구별 1팀(3~5명)을 운영하되, 특·광역시는 시 단위 운영 가능
- 전문가(1명), 선도 농업인(1명), 청년·여성 농업인(1~3명)으로 구성
  - \* 특정 단체·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
  - \*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년농업인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·운영 가능
-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,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

##### □ 주요 활동 계획(안)

- 영농정착지원 대상자(의무영농자 포함) 간담회(반기별 1회 이상)
-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
- 시·도별 온·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
-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(상시)
  - ※ 현장지원단 운영가이드 별도 배포

- 청년농업인 네트워크(포털)를 구축하고,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등 제공

#### 4. 기타 행정사항

##### 1) 사업장의 이전

- 사업장(거주지)를 타 관할 시·군·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 가능
  - \*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해당
- 사업장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이전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이 담당
- 다만, 사업장을 이전한 당해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정지될 수 있음
  - \*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
- 이전 전(前) 사업장 주소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사업장 이전 승인 시, 이전 후(後)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에게 관련 자료 등을 송부
  - \* 또한, 이전 승인 내용 등을 농정원에 반드시 통지

##### 2) 확인서 발급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을 경우, 즉시 발급(별지 2호 서식)

### 3)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

- 시·도지사는 매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(농정원 포함)에 보고

#### < 보고 서식(안) >

| 순번 | 성명 | 경영체번호 | 휴대폰번호 | 바우처 금액 |    | 시군명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|
|    |    |       |       | 월간     | 연간 |     |    |
|    |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|     |    |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사업취소자, 포기자\*, 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(농정원 포함) 및 시·도에 보고

- 농정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

\*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할 경우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사업포기서 징구 (포기사유 필수기재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정착지원금 일시정지, 지급 기간 차감,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처분 조치 후 농식품부(농정원 포함) 및 시·도에 보고

- 농정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통지

\* 처분 조치 결과를 반드시 농식품부(농정원 포함) 및 시·도에 보고

### 4) 환수 절차

- 사업비 정산 전·후에 중도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·군·구에서는 농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

- 농정원은 대상자(포기·취소자)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시·군·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
- 시·군·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(농정원 포함) 및 시·도에 보고

#### 5)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한 전산 관리
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시스템 내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선발정보, 지원사항, 자격(선정상태)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
-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광역시장)은 선발인원(후순위자 포함)의 선정 등록 및 변경사항\* 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
- \* 영농개시, 취소, 포기, 대체, 의무영농대상, 의무영농종료, 이전, 개명, 연락처 변경 등

#### 6)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

- 농식품부(농정원)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

## 〈 부 록 〉

- <별지 제1호 서식>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
- [별표 1]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
- [별표 2]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기준
- [별표 3]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기준
- <별지 제2호 서식> 선정 확인서
- [별표 4]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
- [별표 5]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
- <별지 제3호 서식>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
- <별지 제4호 서식>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
- <별지 제5호 서식> 사업계획 변경 신청(승인)서
- <별지 제6호 서식> 농외 활동 신청서
- <별지 제7호 서식> 사업포기서



[별지 제1호 서식]

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##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| 접수일   | 처리기간 | 60일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|
| 성명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| 성별   |     |
| 영농경력              | [ ] 있음(총 영농기간:    년    월)    [ ] 없음   |      |     |
| 주소                | 전자우편주소  |      |     |
|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 거주 여성<br><input type="checkbox"/>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 |      |     |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 월    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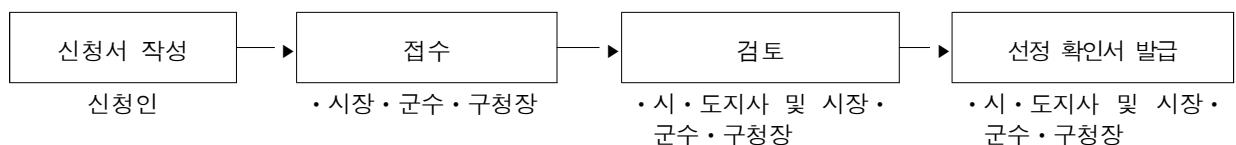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|   |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사업계획서 1부<br>2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|--------|

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신청 첨부서식1]

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신청 첨부서식  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|
| 신청<br>자   | 성명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               | 성별     |  |    |
|   | 농업경영체<br>등록여부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  | 농업경영체<br>등록번호 |        |  |    |
|   | 독립경영기간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3년차 <input type="checkbox"/> 2년차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예정자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배우자 농업경영체<br>등록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  | 배우자 성명        |        | 배우자<br>농업경영체<br>등록번호<br>(주민번호)   |    |
|   | 이메일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휴대폰 번호   |    |
|   | 주소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신청 시도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신청 시군구 |  |    |
|   | 경영주 등록일           | 년 월 일   |               | 영농교육실적 |  | 시간 |
|   | 농업계 학교 졸업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(학교명 : )<br>*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 |               |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(고졸 <input type="checkbox"/> , 대졸 <input type="checkbox"/> , 대학원졸 <input type="checkbox"/> ) |    |
|   | 귀농여부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병역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역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(대상 확정자)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협업경영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부 공동경영 ( <input type="checkbox"/> 여, <input type="checkbox"/> 부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공동창업 ( <input type="checkbox"/> 여, <input type="checkbox"/> 부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영농기반 마련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의 기반 증여·상속 (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체,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현재 경영규모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논 m <sup>2</sup> , <input type="checkbox"/> 밭 m <sup>2</sup> ,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수원 m <sup>2</sup> 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목표하는<br>영농 유형     | <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>를<br>참고하여 반드시 작성   |               | 주품목    |  |    |
| 건<br>보<br>료   | 구분                | 본인세대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| 본인  |               | 배우자    |  |    |
|   | 지역가입자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직장가입자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지원<br>사업  | 합계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영농정착지원금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농지은행 농지지원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입( 논 m <sup>2</sup> , 밭 m <sup>2</sup> , 과수원 m <sup>2</sup> 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( 논 m <sup>2</sup> , 밭 m <sup>2</sup> , 과수원 m <sup>2</sup> )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의향<br>조사  | 후계농육성자금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/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선도농가실습지원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하지 않음 ※ 시·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  |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희망하지 않음 ※ 해당 시·도에 별도 신청 필요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| <p>※ 첨부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필수)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신청서</li> <li>(필수) 영농(창농) 계획서</li> <li>(필수)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(지역가입자) 및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</li> <li>(필수)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내역(주민등록번호 포함))</li> <li>(필수) 병역관련 증명서(병적증명서, 복무확인서,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)</li> <li>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(국세청 홈텍스)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, (재직시)퇴직예정 서약서</li> <li>본인 명의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영장부 등) 사본</li> <li>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(재학증명서, 병역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)</li> <li>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</li> <li>금융기관 신용조사서</li> <li>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(재직증명서 등)</li> <li>농업계 학교(대학원 포함)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,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,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</li> <li>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</li> <li>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</li> <li>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li> </ol> |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    |

**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>**

1. 법적 근거 :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
2. 이용 목적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
3. 수집 항목 : 성명, 성별, 농업경영체 등록 DB에 등록된 정보, 이메일, 휴대폰 번호, 주소,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, 협업경영정보, 병역사항, 영농기반 마련사항, 영농계획서 기재사항, 바우처 사용내역, 재해보험 가입여부, 교육이수 시간, 경영장부 작성
4. 보유 및 이용기간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
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| 성명 | 제공   | 서명 |
|----|--|----|
|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|    |

**<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>**

**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**
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바우처 지급 및 사후관리, 만족도 조사,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: 성명, 주소, 성별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, 바우처 사용내역, 재해보험 가입여부, 교육이수 시간, 경영장부 작성 여부,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, 경영체등록 DB
-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

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| 성명 | 1. 수집·이용   | 서명 |
|----|--|----|
|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|    |

**2.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**
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<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>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·도, 시·군·구,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한국농어촌공사, 농협중앙회, 농협카드,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농지·자금·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,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
  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소지, 휴대폰번호, 바우처 사용내역, 경영체등록 DB, 재해보험 가입여부, 교육이수시간, 경영장부 작성 여부, 후계농자금 대출
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
-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**

| 성명 | 2. 수집·이용   | 서명 |
|----|--|----|
|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|    |

<비영리 농업인 단체>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(한농연 등)
 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
  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소지, 휴대폰번호
 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후 3년
- 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보 제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**

| 성명 | 3. 수집·이용   | 서명 |
|----|--|----|
|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|    |

**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**
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사업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, 영농정착 지원금 중복수혜, 부정수급,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,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, 후계농 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

**\*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,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**

**※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**

| 성명 | 4. 고유식별정보처리  | 서명 |
|----|--|----|
|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 |    |

<별지 신청서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>

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: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 (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)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

\*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

② 영농교육 실적 :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(확인서)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,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 (온라인 10시간 → 5시간)

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: 식량작물, 채소(시설, 노지), 과수, 화훼, 특용작물, 축산, 복합(축산, 경종) 중 선택하여 기재

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: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(5~10년) 및 매입(지원상한 12.3~25.4천원/m<sup>2</sup>, 연리 1%, 최장 30년 균분상환) 지원

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: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, 영농경력 10년 미만인(예정자 포함) 자에게 농지구입,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(최대 5억원, 연리 1.5%, 5년 거치 20년 상환)

⑥ 영농정착지원금 : 청년 농업인(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)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금을 지급(매월 최대 110만원)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

⑦ 선도농가실습지원 :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(선도농가 :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, 3~7개월 / 연수생 :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, 3~7개월)

-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(영농개시자)는 연수생 선발 불가(예정자만 지원가능)

\* 시·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

⑧ 청년농 창업·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: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(만49세 미만)에게 기술·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(컨설팅 총액 1,000만원, 자부담 200만원)

## 5개년 영농(창농) 계획서

\*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(소유, 임차 등)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(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),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, 향후 계획만 작성

### 1. 일반현황

#### 1-1. 영농 유형

| 구분  | 현재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
| 주품목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부품목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#### 1-2. 농업경영 구성원(본인 제외)

| 구분         | 현재    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|    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
| 가족<br>공동대표 | 명<br>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고용         | 상시     |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| 임시     |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     | 일용     | 월 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### 2. 농지 규모(단위 : m<sup>2</sup>)

| 구분  | 현재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
| 논   | 소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임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밭   | 소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임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과수원 | 소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임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목초지 | 소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임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합계  | 소유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임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2-1. 가축 사육규모

※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

소

| 구분  | 현재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| 성축(成畜)<br>(7개월 이상) | 자축(仔畜)<br>(7개월 미만) | 성축(成畜)<br>(7개월 이상)                 | 자축(仔畜)<br>(7개월 미만) | 평균<br>납유량(l/일) |
| 한 우 | 비육우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X              |
|     | 번식우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육 우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젖 소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돼지

| 구분                | 현재     |       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상시모돈두수 | 연간출하두수 | 상시모돈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간출하두수 |
| 양 돈<br>(일관/비육 선택)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종 돈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가금

| 구분   | 현재(사육마리수)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 계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란계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육용계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종오리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육용오리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기타가축

| 구분 | 현재(사육마리수)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염소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0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농지 및 축사 소재지

#### 1) 소유

| 연번 | 현 재          |    |   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|    |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|----|----|
|    | 주소           | 지목 | 작목 | 주소  | 지목 | 작목 |
| 1  | 리·동, 지번까지 기재 |    |    | 리·동까지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
| 2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|    |    |
| 3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|    |    |

#### 2) 임차

| 연번 | 현 재          |    |   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|    |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|----|----|
|    | 주소           | 지목 | 작목 | 주소  | 지목 | 작목 |
| 1  | 리·동, 지번까지 기재 |    |    | 리·동까지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
| 2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|    |    |
| 3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|    |    |

### 4.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

(단위 : m<sup>2</sup>)

| 구분    | 소유/임차 | 현 재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|     |     |     | 합 계 |
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  |       | 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     |
| 유리 온실 | 소유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| 임차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비닐 온실 | 소유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| 임차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축사    | 소유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| 임차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가공 시설 | 소유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| 임차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000   | 소유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 | 임차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

**5. 농기자재(보유 및 확보계획)**

| 구분  | 현 재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 |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| 3년차 | 4년차 | 5년차 |
| 트랙터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콤바인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000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**6. 자금조달 계획**

| 구분    | 자부담 | 정책자금 용자 | 합 계 |
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농지    |     |         |     |
| 시설    |     |         |     |
| 농기계장비 |     |         |     |
| 농자재   |     |         |     |
| 00    |     |         |     |

**7. 농업경영 역량**

**1) 학교(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) 교육**

| 학교명/학부 또는 학과명 | 재학기간 | 경종·축산 관련<br>전공교육 과정명 | 이수 학점<br>또는 교육 시간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\*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인증서 사본 제출

\*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

**2) 사회 교육**

| 교육기관 | 교육과정명 | 교육기간 | 교육시간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
\* 수료증 사본 제출

### 3) 농업법인 재직 경력

| 법인명 | 재직기간 | 직무내용 |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재직증명서 등 제출

### 4) 농업 생산, 가공,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

|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| 인증번호 | 발행기관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### 5) 경영관리 현황

\*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

| 순번 | 확인 요소                      | 응답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 |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?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| 2  | 최근 1년간 경영장부(회계장부)를 작성하였는가?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| 3  | 전산으로 경영장부(회계장부) 관리를 하는가?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S/W명 :<br>(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?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| 5  |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?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| 6  |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?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|

\*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,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

### 8. 판매·마케팅 계획

| 판매처    | 현재 판매 비중(%) |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정 이후(%)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판장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온라인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협공동출하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0000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 계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생산물 판매·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

### 9. 홍보계획

| 홍보수단(방법) | 현 재(%) | 청년후계농 선정 이후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SNS 활용   |        |             |
| 전시회 참여   |        |             |
| 방송매체 활용  |        |             |
| 0000     |        |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|        |             |

### 10.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

| 내부 장애요인 | 대응방안 |
|---------|------|
| 1.      |      |
| 2.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|
| 외부 위협요인 | 대응방안 |
| 1.      |      |
| 2.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|
|         |      |

### 11. 교육훈련 계획

※ 농업교육포털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,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 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

| 영역   |       | 1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년차                 | 3년차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경제어 | 교육 내용 | 작물 생육특성 이해, 최적의 생육 환경, 최적 환경 구성 |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|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|
|      | 이행 방안 | 농업기술센터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| 농업기술센터, WPL         | WPL 교육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## < 참고 : 영농 및 경영 활동 >

| 영역    |  |
|-------|--|
| 재배/사육 | 생육특성 이해, 품종이해, 육묘 관리, 양수분 관리, 병해충 방제, 과수원 조성, 정지 및 전정, 장해관리, 결실관리, 수확관리, 수확후 관리, 농기계관리, 농자재 특성 및 활용, 시설 설치, 환경제어, 양액조제 및 활용, 번식관리, 사양관리, 영양관리, 질병위생관리, 분뇨 처리 등 |
| 경영    | 사업환경분석, 마케팅 전략 수립, 회계관리, 자금관리, 재무분석, 인사채용, 직무 관리, 조직관리, 구매관리, 커뮤니케이션, 가공 상품개발, 농촌체험 상품 개발, 농산물 가공, 스마트팜 등  |

## 12.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(3페이지 이내)

※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  
(평가 시 우대)

### <영농 동기>

- 영농 동기, 목표의식,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

### <현재 상황>

-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,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
-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, 농산물 생산량, 판매처,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

### <경영계획>

- 연차별(5개년 계획)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, 자금 조달계획, 생산기술, 영농기반 구축 방안, 경영 다각화 방향, 생산기술-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,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

##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

| 신청자 성명             |   | 생년월일  |   | 신청한<br>독립경영연차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<b>단계</b>          | <b>점검 사항</b>  | <b>내용</b>   |   |   | <b>점검<br/>결과</b> |
| <b>접수<br/>단계</b>   | <b>필수 서류가 모두<br/>제출되었는가?</b>  | ①가족관계증명서<br>②영농계획서<br>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<br>④병역관련 증명서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b>병역필 또는<br/>면제자 인가?</b>   | -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<br>-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<b>평가<br/>단계</b>   | <b>신청<br/>자격</b>  | <b>독립경영<br/>기간이 3년<br/>이내인가?</b>  | 농업경영체등록상<br>경영주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<br>내인지 여부(2021년 1월 1일<br>이후)<br>② 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<br>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<br>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| 농업경영체등록상<br>경영주가 아닌 경우  |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<br>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<br>여부 확인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b>재산 및<br/>소득<br/>기준이<br/>적합한가?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본인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각<br>기준에 적합여부 확인<br>②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,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<br>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(산정액)을<br>기준으로 판단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b>건보료</b>  | 구분  | 본인세대 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역<br>가입자   | 본인  | 배우자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직장<br>가입자  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<b>평가위원<br/>섭외</b> |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<br>평가위원을 섭외하고,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<br>하여야 함을 안내 |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<b>선정<br/>단계</b>   | <b>독립경영<br/>연차 확정</b>   | 농업경영체 등록증(부부 모두)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<br>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b>재산 및 소득<br/>재확인</b>  |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 |   |   |                  |

##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(서면평가)

| 평가 지표             | 평가 항목         | 평가내용  | 평가척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영농 비전 (30)        | 장기 영농 계획 (10) | 1.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?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영농 방법 (10)    | 2.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,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?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,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(스마트팜, 6차산업 등)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지속 가능성 (10)   | 3.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 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?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영농 계획 구체성 (25)    | 품목 선정 (5)     | 4.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?  | 5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생산 계획 (10)    | 5.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?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판매 계획 (10)    | 6.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(25) | 자금 마련 계획 (10) | 7.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?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용자,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교육 훈련 계획 (10) | 8.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?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교육방법, 교육 내용,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| 신용 상태 (5)     | 9.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?  | 양호(5)                    | 보통(2.5)                  | 불량(1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(농협)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평가 지표          | 평가 항목  | 평가내용  | 평가척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개인역량<br>(20)   |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(10)   | 10-1. 농업계 관련 학교(학과)를 졸업하였는가?  | 농업계 (10)                 | 비농업계 (0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|  | 평가방법 :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<br>(증빙자료 : 성적증명서, 앨범,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)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| 10-2. 최근 3년 이내 ('21.1.1.~'23.12.31.)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?<br>※ 농고·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 | 100시간 이상 (10)   | 70 ~99 (8)               | 40 ~69 (6)               | 20 ~39 (3)               | 15 ~19 (1)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,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('21.1.1.~'23.12.31.)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, 농업법인 근무경력 이상인 자,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<br>(증빙자료 : 교육수료증,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)<br>※ 농업관련 온라인(사이버)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%,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<br>(예시 :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)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|
|                | 11. 농축산물 생산, 유통,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?  | 상 (5)   | 중 (3)                    | 하 (1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자격증 보유 수준 (10) | 평가방법 :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<br>※상(5점) : 친환경, GAP,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(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)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<br>중(3점) : 국가공인자격증(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)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<br>하(1점) :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| 12.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?  | 상 (5)   | 중 (3)                    | 하 (1)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| 평가방법 :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, 마케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기계·설비 등 영농 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<br>※ 상(3개 이상), 중(2개), 하(1개)<br>-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기술자격검정원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세무사회, 한국생산성본부,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가점             | <b>&lt;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: 최대 3점&gt;</b><br>- 독립경영예정자(1점)<br>-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: 최대 1점(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대학,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)<br>- 농산업분야 실무경험(인턴십, 농업법인 근무, 청년귀농장기교육, 선도농가 실습지원(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),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,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, 영농창업특성화과정(미래농업선도고교·영농창업특성화대학) 졸업인증제 수료증)이 있는자(2점)<br><b>&lt;독립경영 1~3년차 가점 항목: 최대 3점&gt;</b><br>• 수상실적(1점)<br>- 중앙정부(0.5점), 지방자치단체(0.3), 농업인단체(0.2)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(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,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)<br>• 경영장부 기록(1점)<br>-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<br>• 정책참여도(1점)<br>- 재해보험가입, 농업인안전보험가입,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, 들녘경영체,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, 품목별 연구회(농진청 주관),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<br><b>&lt;여성·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: 최대1점&gt;</b><br>- 여성 및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(1점)<br>-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(1점)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

##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(면접평가)

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문항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농업에 대한 자세<br>(40) | 1.1. 농업관                        | 1.1.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?(15)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1.2. 목표의식                       | 1.2.1.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?(15)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1.3. 영농 추진 의지 및 열정              | 1.3.1.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?(10)  |
| 2. 영농정착 가능성<br>(40)  | 2.1. 지역사회 참여                    | 2.1.1.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?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.2.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              | 2.2.1.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?(5)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.3.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           | 2.3.1.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?(15)<br>* 영농기반 마련, 축산업 허가,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|
|                      | 2.4. 성장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| 2.4.1. 스마트팜,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?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2.5. 지원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| 2.5.1.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, 농지·자금·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?(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창업 역량<br>(20)     | 3.1.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             | 3.1.1.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?(10)  |
|                      | 3.2. 청년농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, 친화력, 소통능력 | 3.2.1. 청년농업인으로 적합한 인성, 친화력, 소통능력이 있는가?(10)   |

※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(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%씩 차감하여 부여)  
15점 항목(15-12-9-6-3), 10점 항목(10-8-6-4-2), 5점 항목(5-4-3-2-1)



[별표 4]

##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(안)

| 구분  | 주관      | 분야  | 주요 내용  | 추진방식  |
|-----|---------|---|--|---|
| 필수  | 공통 교육   | 농정/제도   | 농업정책 및 지원, 농지은행 제도 및 지원(농어촌 공사), 정책자금(농협은행), 신용보증기금 제도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, 재해보험 가입 안내(농업정책보험금융원)  | *권역별로 운영하되, 타 지자체 교육 참여 가능<br>* <b>선정년도 이수율 원칙</b> 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<br>(단, <b>연차별 의무 교육시간은 필수 이수</b> 해야함)<br>*영농경력 및 기술 습득 역량에 따라 진입단계와 성장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|
|     |         | 마인드   | 농업의 미래가치, 안전관리, 윤리경영, 청년농 선배와의 대화 등  |   |
|     | 진입 (창업) | 경영 기초   | 농지 구입, 작물 선택, 경영체 등록, 마케팅 전략, 노무관리, 성공사례 공유 등  |   |
|     |         | 지역 사회   | 마을공동체 활성화, 농촌정착 방안 등   |   |
|     | 성장 (승계) | 회계 유통   |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'농업경영장부' 프로그램 실습, 유통판로의 이해   |   |
|     |         | 농업 정책   | 농업정책과 농촌활성화, 지역 농촌 가치 창출   |   |
| 선택  | 생산      |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 | *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<b>온라인교육 과정</b> 을 이수할 수 있으며, <b>전체 선택 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인정</b><br>단, 도서지역*은 (제주도 제외) 선택 교육시간의 <b>70%</b> 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<br>*도서·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(도서지역) |   |
|     | 경영      | 유통·마케팅, 홍보, 영농계획 수립, 정보 획득, 6차 산업, 사업기반 조성, 경영관리·회계·세무, 기초 법률, 고객 이해, 경영리더십 등 |  |   |
|     | 정책      |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, 후계농 간 네트워크  |  |   |
|     | 정착지원    | 지역민과 갈등관리, 농촌문화 이해하기, 부모와 갈등관리(승계) 등  |  |   |
|     | 기타      | 지자체 및 농협  |  | 지자체, 농업기술센터, 농업인 단체,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등  |
|     |         | 농업교육 포털   |  |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내 교육(집합, 온라인) 등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한 농업교육   |
|     |         | 농업 관련 자격증   |  | 농업 관련 자격증 및 농식품 국가인증(친환경, GAP, HACCP, 저탄소 농축산물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 등)   |
| 컨설팅 |         | 품목별 연구회(시·군 농업기술센터), 경영체 컨설팅(농정원), 기술컨설팅(농업기술진흥원)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
##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

| 유형(업종코드)                    | 사용 가능 업종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여행업(11)                     | 고속버스, 철도, 여객선, 택시, 택시회사, 렌트카, 기타교통수단   |
| 레저용품·업소(20, 21)             | 스포츠레저용품, DVD/음반/테이프판매, 볼링장, 테니스장, 수영장, 헬스크럽, 종합레저타운  |
| 문화/취미(22)                   | 화원, 애완동물, 영화관, 티켓, 문화취미기타  |
| 가구(30)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가구, 철제가구, 기타가구   |
| 가전제품(31)                    | 가전제품, 냉열기기, 기타전기제품   |
| 주방용품(32)                    | 주방용구, 주방용식기, 정수기, 기타주방용구   |
| 연료판매(33)                    | 주유소, LPG, 연탄판매, 유류판매, SK주유소, SK가스충전소, GS주유소, 현대정유오일뱅크, 쌍용S-oil주유소, 인천정유주유소, GS가스충전소, 현대정유가스충전소, 쌍용S-oil가스충전소, 인천정유가스충전소, 기타연료  |
| 유통업영리(40)                   | 대형할인점, 편의점, 슈퍼마켓, 연쇄점, 보훈매점, 복지매점, 농축수산물가공품, 농협식품점, 기타쇼핑점, 기타유통업   |
| 유통업비영리(41)                  | 공무원연금매점, 농축협직영매장, 농협하나로클럽, 사원매점, 구내매점, 농수축협직판, 대우사내판매, 기타비영리유통   |
| 의류(42)                      | 정장(남성), 정장(여성), 아동의류, 양품점, 내의판매점, 와이셔츠/타이, 캐주얼의류, 스포츠의류, 단체복, 맞춤복점, 기타의류   |
| 직물(43)                      | 옷감직물, 카페트, 커튼, 천막, 지물, 침구수예점, 혼수전문점, 기타직물  |
| 신변잡화(44)                    | 악세사리, 안경, 제화점, 신발, 기념품점, 기타잡화  |
| 서적/문구(50)                   | 일반서적, 전문서적, 정기간행물, 출판인쇄물, 교육테이프, 문구용품, 과학기자재, 완구점, 기타서적문구  |
| 학원(51)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어학원, 기능학원, 컴퓨터학원, 예체능학원, 보습학원, 학습지교육, 대학등록금, 초중고교육기관, 유치원, 유아원, 독서실, 기타교육  |
| 사무/통신기기(52)                 | 컴퓨터, 사무기기, 통신기기, 전자(상우회), 기타사무용  |
| 자동차정비(61)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시트/타이어, 자동차부품, 유탄유전문판매, 자동차정비, 국산신차직영부품/정비업소, 중장비수리, 카인테리어, 세차장, 주차장, 견인서비스, 기타자동차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기관(70)                    |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치과병원, 신경정신과, 안과, 치과, 의원, 한의원, 치과의원, 기타, 건강진단, 한의원, 한약방, 제약회사, 약국, 한약방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동물병원, 건강진단,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|
| 보건/위생(71)                   | 이용원, 미용원, 안경, 화장품, 의료용품, 사우나   |
| 음식/음식료품<br>(80, 83, 84, 85) | 일반한식, 갈비전문점, 한정식, 일식회집, 중국음식, 서양음식, 스낵, 위탁급식업, 제과점, 정육점, 농축수산물, 미곡상, 기타음료식품, 홍삼제품, 인삼제품, 기타건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축/자재(90)                   | 보일러펌프, 건축요업품, 조명기구, 페인트, 유리, 목재·석재·철물, 인테리어, 기타건축자재  |
| 용역서비스(91)                   | 보관창고업, 화물운송, 사무서비스, 공공요금, 공공요금/대상  |
| 수리서비스(92)                   | 레저용품수리, 가정용품수리, 신변잡화수리, 사무통신기기수리, 세탁소, 기타수리서비스   |
| 농업/공구(96)                   | 농기계, 비료/농약/사료/종자, 기타농업관련   |
| 광학제품, 기타(34, 99)            | 사진관, 기계공구, 비영리, 비영리/비대상  |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( 분기)

### 1. 인적사항

|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 명 | (서명) | 생년월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주 소 |      | 농업경영체<br>등록번호 |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| (000) -<br>휴대폰 : |

#### 1-1. 법인 정보

|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|
| 법인명       |  | 공동<br>대표자     |  |
| 소재지<br>주소 |  | 농업경영체<br>등록번호 |  |
|           |  | 사무실<br>전화번호   |  |

\*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

### 2. 금융정보

|  |     |
|--|-----|
| 농협 계좌  | 확 인 |
| 영농정착지원금 체크·신용카드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열람 동의여부<br>(미 동의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됨) |     |

### 3. 영농정보

| 독립경영기반 마련 여부 |                 | 여(     ), 부(     )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독립경영 마련한 경우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물·부분명       | 소유 형태(소유 또는 임차) | 경작면적(m <sup>2</sup> ) 및 사육두수 등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4. 신청금액

| 구분 | 금액(원)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| 0월 |       |    |

[별지 제4호 서식]

##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( 분기)

### 1. 인적사항

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주 소 |      | 전화번호 | (000) -<br>휴대폰 : |
| 성 명 | (서명) | 생년월일 |                  |

### 2. 변경사항

| 구분 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|------|------|
| 주품목 |      |      |
| 면적  |      |      |

### 3. 의무이행사항 확인

| 구 분     |      | 여    | 부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|
| 경영장부 작성 |      |      |   |
| 재해보험    |      |      |   |
| 의무자조금   |      |      |   |
| 교육이수    | 교육과정 | 교육시간 |   |
| 필수교육    |      |      |   |
| 선택교육    |      |      |   |

### 4. 기타 추진사항

- 
- 
-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

### 사업계획 변경 신청(승인)서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세부내용 |      |  |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|----|--|
| 영농<br>(창업)계<br>획서 | 성 명         |      | 생년월일 |  | 성별 |  |
|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|      |      |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유형<br>(주품목) |      |      |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선정년도        |      |      |  |    |  |
| 변동<br>사항          | 변동내용        |      |      |  |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사유          |      |      |  |    |  |

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(승인)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 : ○○○시장(군수, 구청장)



[별지 제6호 서식]

##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(승인)서

1. 주 소 :
2. 성 명 :
3. 생년월일 :
4. 사 유 :
5. 기 간 :
6. 농외활동 내용 :
7. 증빙자료 :

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(승인)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 : ○○○시장(군수, 구청장)

